

2026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안내

(아동권리보장원, '26.3.20(금))

- ◇ 종사자는 「2026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및 「2026년 지역아동센터 교육 운영 매뉴얼」 기준 및 각 시도지원단 안내에 따라 2026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을 이수
- ◇ 사업안내 내 변경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
※ 개정된 사항을 파란색으로 안내하오니, 교육 이수에 참고

1 교육대상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직책과 경력 및 근무연차에 따라 교육대상 구분

〈 2026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대상 〉

구분			대상 기준
기존시설	기존 종사자	시설장	'23.1월~'25.12월까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경력 1년 이상인 자
		생활복지사	'23.1월~'25.12월까지 지역아동센터 경력 1년 이상인 자
	신규 종사자	시설장	'23.1월~'25.12월까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경력 1년 미만인 자
		생활복지사	'23.1월~'25.12월까지 지역아동센터 경력 1년 미만인 자
신규시설 ('26.1월 이후 개소)	신규 시설장		'26.1월 이후 개소한 지역아동센터 신규 시설장 (<del>'23.1월~'25.12월까지 기존시설 시설장</del> 경력 1년 이상인 자는 제외, 1년 이상인 자는 기존 종사자 교육 이수)

2

교육과정 및 시간

〈 2026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과정 〉

구분			교육시간	교육과정	
				필수교육	선택교육
기존 시설	기존 종사자		25시간	◦ 집합교육(5시간)	필수교육 외 시간
	신규 종사자	시설장	25시간	◦ 법정의무교육	
				생활 복지사	
		◦ 법정의무교육			
			◦ 집합교육(13시간)		
신규 시설 (’26.1월 이후 개소)	신규 시설장*		60시간	◦ 법정의무교육	

* ’26~’27년 간 이수한 교육을 합산하여 인정(예외적으로 이수시간 이월 가능)하되,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이수 필요

* 운영컨설팅 35시간(현장실습 포함)은 별도로 참여해야함

□ (필수 집합교육)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종사자별 집합교육 과정

구분			교육 내용	시간
기존시설	기존 종사자	시설장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보조금 사용 기준 · 아동권리	5시간
		생활 복지사		
	신규 종사자	시설장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아동권리 · 재무회계(보조금 사용 기준 포함)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활용 · 지역사회자원개발과 연계 포함	13시간
		생활 복지사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아동권리 · 보조금 사용 기준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활용 · 아동지원 발달 및 지도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포함	
신규시설 (’26.1월 이후 개소)	신규 시설장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아동권리 · 재무회계(보조금 사용 기준 포함)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활용 · 지역사회자원개발과 연계 포함	

□ (필수 법정 의무교육) 개별 법령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공통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법정 의무교육

○ **수강기준:** 법정 의무교육의 관련법 및 교육 주관 부처(부서)의 안내(교육 내용·방법 및 교육기관 등)를 준수하여 이수해야하며, 개정 시 변동 가능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 매년 1시간 이상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매년 1시간 이상
- 어린이안전교육(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매년 4시간 이상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매년 1시간 이상
-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매년 1회 이상
-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매년 1시간 이상
- 자살예방교육(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매년 1회 이상

○ **수료증 인정기관:** 위의 안내된 교육기관과 그 외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원단에서 발급된 수료증만 인정

교육명 (관련 법령)	시간 (교육 기간)	온라인 수강 가능 사이트 (교육기관 개별 사정으로 교과목 운영이 종료될 수 있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매년 1시간 이상 (연중)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매년 1시간 이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in.kohi.or.kr)
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매년 4시간 이상 (연중)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확인 (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 에서 확인) ※ 응급처치 실습교육(2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이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매년 1시간 이상 (연중)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인천e배움캠퍼스(incheon.hunet.co.kr), 대전 평생교육진흥원(www.dile.or.kr), 세종e배움터(www.sjhle.or.kr),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도민사이버배움터 (elearning.provin.gangwon.kr)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매년 1회 이상 (연중)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매년 1시간 이상 (연중)	온국민 평생배움터(all.go.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 대전ON배움(www.dile.or.kr),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매년 1회 이상 (연중)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edu.ksfp.or.kr)
※ 주의사항	[어린이안전교육]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최초 교육을 이수 해야 하며, 이후 연 1회 교육 이수	

□ (선택교육) 자율적으로 종사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여 이수

○ 교육 시간: 교육시간* 중 필수교육** 외 시간

* 교육시간: 기존 종사자(25시간), 기존시설 신규 시설장 및 신규 생활복지사(25시간),
신규시설 신규 시설장(60시간)

** 필수교육: 필수 집합교육(5시간 또는 13시간) 및 필수 법정 의무교육

○ 수강 기준: 수료증 증빙 가능 기관에서 자율 수강

3 교육이수 관리

□ 관리기준

- 종사자 교육이수 여부는 시설에서 종사자 개인단위로 관리함
 - ※ 종사자는 교육이 완료되면 교육이수여부 확인 증빙서(수료증 등)를 시설에 반드시 제출 필요
- 이수시간은 시설의 회계연도에 귀속되며, 연도이월은 불가함
 - ※ '26년에 30시간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추가시간 5시간이 '27년으로 이월되지 않음

□ 연도 중 취업(복직) 또는 퇴사(휴직)한 경우

- 연간 교육이수 기준시간은 근무 개월수×2시간으로 산정함
 - ※ 근무 개월수는 취업(복직)한 달의 다음달 및 퇴사(휴직)한 달의 이전달을 기준으로 산정
 - ※ 1~2월 중 퇴사(휴직) 또는 11~12월 중 취업(복직)한 종사자의 기준시간은 0시간으로 처리
- 교육 이수 기준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 의무 교육은 이수해야 함
- 필수 집합교육 시행 전 퇴사(휴직) 또는 필수 집합교육 일정 종료 후 취업(복직)한 경우 필수 법정 의무교육과 선택교육 실적으로 대체함
 - ※ 경력이 1년 미만인 신규 종사자는 다음연도에 신규 종사자 필수 집합교육 이수 필요
- '26년 신규 종사자 교육대상 중 '25년 연도 중 취업 후 해당 보직의 신규 종사자 필수 집합교육을 이수한 자는 '26년 기존 종사자 교육 이수 가능
 - ※ 보직 변경이 없는 경우
 - ※ 신규 시설장 제외

□ 이직 및 보직변경의 경우

- 타 사회복지시설에서 현 지역아동센터로 이직한 경우 이직 전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수한 동일과정 교육시간은 이수시간에 산입함
- 종사자 보직변경 시 보직변경 전 이수한 교육 시간은 당해 이수시간에 산입함

□ 신규 시설 신규 시설장 교육

- 근무 시작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까지 교육이수 기준시간(총60시간)을 충족해야 함

※ '26~27년 간 이수한 교육을 합산하여 인정(예외적으로 이수시간 이월 가능)하되, 법정 의무교육은 매년 이수 필요

※ 6개월 이내에 운영컨설팅 35시간(현장실습 포함)은 별도로 참여해야 함

- 근무 시작일이 속한 해의 다음 다음해부터는 기존 종사자 교육 대상으로 전환됨

① 기존 종사자 교육

교육분야		교육내용	시간
필수 교육	집합교육 (시도지원단 운영)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필수) - 보조금 사용 기준(필수) - 아동권리(필수) - 그 외 종사자 욕구 반영한 교육 ※ 필수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하여 필수 집합교육 운영 가능	5시간
	법정의무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어린이안전교육(매년 4시간 이상)***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개인정보보호교육(매년 1회 이상) -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자살예방 교육(매년 1회 이상) ※ 법정 의무 교육의 이수방법 등은 관련법 및 교육 주관 부처(부서)의 안내에 따라 이수해야 하며, 개정 시 변동 가능	-
선택교육		- 수료증 증빙 가능 기관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 - 아동권리보장원(educ.ncrc.or.kr) - [지역아동센터 기초교육] 참고 - 시도지원단에서 종사자 욕구 및 교육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시도별로 다양한 과정 마련하여 교육 운영 가능	필수교육 외 시간
총 시수			25시간
※ 비고	* 각 교육의 수료증은 출력하여 시설에서 별도 보관·관리 필요 ** [어린이안전교육]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최초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이후 연 1회 교육 이수 - (참고) 연말 취업한 자로 최초교육 이수 기간(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 다음연도까지 이어지는 경우, 취업 해당연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의무는 없음 (예시) '26년 11월 중도 입사한 경우, 해당 업무 수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7년 1월 중 교육을 이수하여도 무방함		

② 기존시설 신규 시설장 교육

교육분야		교육내용	시간
필수 교육	집합교육 (시도지원단 운영)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필수) - 재무회계(보조금 사용기준 포함/필수) - 아동권리(필수)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활용(필수) - 지역사회자원 개발과 연계(필수) - 그 외 종사자 욕구 반영한 교육 ※ 필수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하여 필수 집합교육 운영 가능	13시간
	법정의무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어린이안전교육(매년 4시간 이상)***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개인정보보호교육(매년 1회 이상) -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자살예방 교육(매년 1회 이상) ※ 법정 의무 교육의 이수방법 등은 관련법 및 교육 주관 부처(부서)의 안내에 따라 이수해야 하며, 개정 시 변동 가능	-
선택교육		- 수료증 증빙 가능 기관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 - 아동권리보장원(edu.ncrc.or.kr) - [지역아동센터 기초교육] 참고 - 시도지원단에서 종사자 욕구 및 교육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시도별로 다양한 과정 마련하여 교육 운영 가능	필수교육 외 시간
총 시수			25시간
※ 비고	* 각 교육의 수료증은 출력하여 시설에서 별도 보관·관리 필요 ** [어린이안전교육]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최초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이후 연 1회 교육 이수 - (참고) 연말 취업한 자로 최초교육 이수 기간(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 다음연도까지 이어지는 경우, 취업 해당연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의무는 없음 (예시) '26년 11월 중도 입사한 경우, 해당 업무 수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7년 1월 중 교육을 이수하여도 무방함		

③ 신규 생활복지사 교육

교육분야		교육내용	시간
필수 교육	집합교육 (시도지원단 운영)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필수) - 보조금 사용 기준(필수) - 아동권리(필수)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활용(필수) - 아동지원 발달 및 지도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그 외 종사자 욕구 반영한 교육 ※ 필수 법정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필수 집합교육 운영 가능	13시간
	법정의무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어린이안전교육(매년 4시간 이상)***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개인정보보호교육(매년 1회 이상) -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자살예방 교육(매년 1회 이상) ※ 법정 의무 교육의 이수방법 등은 관련법 및 교육 주관 부처(부서)의 안내에 따라 이수해야 하며, 개정 시 변동 가능	-
	선택교육	- 수료증 증빙 가능 기관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 - 아동권리보장원(edu.ncrc.or.kr) - [지역아동센터 기초교육] 참고 - 시도지원단에서 종사자 욕구 및 교육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시도별로 다양한 과정 마련하여 교육 운영 가능	필수교육 외 시간
총 시수			25시간
※ 비고	* 각 교육의 수료증은 출력하여 시설에서 별도 보관·관리 필요 ** [어린이안전교육]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최초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이후 연 1회 교육 이수 - (참고) 연말 취업한 자로 최초교육 이수 기간(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 다음연도까지 이어지는 경우, 취업 해당연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의무는 없음 (예시) '26년 11월 중도 입사한 경우, 해당 업무 수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7년 1월 중 교육을 이수하여도 무방함		

4 신규시설 신규 시설장 교육

교육분야		교육내용	시간
필수 교육	집합교육 (시도지원단 운영)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필수) - 재무회계(보조금 사용기준 포함/필수) - 아동권리(필수)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활용(필수) - 지역사회자원 개발과 연계(필수) - 그 외 종사자 욕구 반영한 교육 ※ 필수 법정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필수 집합교육 운영 가능	13시간
	법정 의무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어린이안전교육(매년 4시간 이상)***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개인정보보호교육(매년 1회 이상) -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자살예방 교육(매년 1회 이상) ※ 법정 의무 교육의 이수방법 등은 관련법 및 교육 주관 부처(부서)의 안내에 따라 이수해야 하며, 개정 시 변동 가능	-
선택교육		- 수료증 증빙 가능 기관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 - 아동권리보장원(edu.ncrc.or.kr) - [지역아동센터 기초교육] 참고 - 한국사회보장정보원(edu.ssis.or.kr)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활용 교육을 수강 참고 * [교육신청] - [온라인 신청] -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 시스템] - [사회복지시설]-희망이음 관련 교과 수강 - 시도지원단에서 종사자 욕구 및 교육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시도별로 다양한 과정 마련하여 교육 운영 가능	필수교육 외 시간
총 시수			60시간
※ 비고	* 각 교육의 수료증은 출력하여 시설에서 별도 보관·관리 필요 ** [어린이안전교육]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최초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이후 연 1회 교육 이수 - (참고) 연말 취업한 자로 최초교육 이수 기간(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 다음연도까지 이어지는 경우, 취업 해당연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의무는 없음 (예시) '26년 11월 중도 입사한 경우, 해당 업무 수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7년 1월 중 교육을 이수하여도 무방함		